

## 특별항고

항고인: 김명호,  
서울시

서울고등법원 2005 나 84701 교수지위확인 사건 관련, 동 법원이 2006년 5월 12일, 방어방법각하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각하하였으나 이에 불복, 민사소송법 제 439 조(항고의 대상)와 제 449 조(특별항고)에 따라 특별항고를 제기합니다.

### 원 결정의 표시

“ 2006. 5. 1. 자 방어방법각하 신청 기각 결정은 항고대상이 아니다.” (5월 26일 변론기일에서 서울고법 민사 2부 박홍우 부장판사 구술로 고지)

### 특별항고 취지

“ 2006. 5. 1 자 방어방법각하신청 기각결정의 항고에 대한, 각하 결정을 취소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특별항고 이유

#### 1. 특별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특별항고인은 민사소송법 제 149 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상대방의 방어방법에 대한 각하신청을 하였고(입증자료 1), 그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 439 조(항고의 대상)에 의하여, 항고하였습니다.

박홍우 재판장은 항고대상이 아니라며 각하결정을 하였기에 민사소송법 제 449 조에 따라 특별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 2. 민사소송법 제 449 조의 특별항고 사유 해당여부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 449 조(특별항고)

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149 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 146 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자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 439 조(항고의 대상)

제 439 조 (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박홍우 재판장의 각하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률 또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 449 조에서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 특별항고인은 위 민사소송법 제 149 조와 제 439 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항고를 한 것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박홍우 판사의 항고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은 민사소송법 제 449 조를 위반한 것.

나. 가사 박홍우 재판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대법원 규칙에 의하여 항고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면,  
그 결정은 헌법 108 조

“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에서의, 법률, 즉 민사소송법 제 439 조에 위배하는 규칙에 따른 것 이므로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사 소송법 제 449 조의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의 위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결 론

위에 언급한 헌법과 민사소송법으로부터 명백하듯이, 방어방법 각하신청기각의 항고에 대한 박홍우 재판장의 각하 결정은 위헌 또는 위법적인 것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하며, 방어방법 각하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특별항고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자료를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2006년 6월 1일

위 특별항고인 김명호 (날인 또는 서명)

## 입증 자료

1. 항고장(2006. 5. 18 일 제출)
2. 피고 성대의 소송위임장(방어방법각하신청의 추가자료)

대법원 귀중